

# 입안계획서

## 1. 행정규칙명

- 「사후관리에 관한 고시」(관세청고시 제2022-15호, '22.5.1.)

## 2. 개정 이유

- 국민체감형 규제혁신 과제 실행 및 자체 제도개선 발굴 내용 반영
- 2022.12.1. 발효 예정 한-이스라엘 FTA 및 한-캄보디아 FTA 적용물품 중 용도세율 대상물품 개정고시 반영(별표1의 가, 별표1의 나)
- 「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」 개정 관련 '22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 조정

## 3. 주요 개정내용

### □ 업무절차 간소화 및 사후관리 비대상 확대

- 사후관리 위반사항 적발 시 본청에 건별 공문보고 하던 것을 시스템 등록으로 같음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 개선
- 사실상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사후관리 생략물품(별표 1의 나)을 별표2의 특기사항(※이하)에 추가하여 행정상 혼선 방지

### □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(별표 1의 가, 별표 1의 나)

- 신규 발효 예정 FTA 개정사항을 반영한 실행관세율 정비
-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설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신규 지정(19개 품목)
  - \* 정제유(식품용), 전해액 첨가제(이차전지제조용), 망간(철강제조용), 원유(항공유 제조용), 감자전분(식품용) 등

4.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: “붙임”

5. 시행 일자 : 2022. 12. 1.(예정)

6. 의견제출 방법

○ 제출처 :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

○ 담당자 : 채정균 사무관, 김송영 행정관

○ 제출기한 : 2022. 11. 21.(월)

○ 제출방법 : (전화) 042-481-7883

(팩스) 042-481-7791

(전자우편) you2pia70@korea.kr